ISSN: 1229-6783 (Print)

ISSN: 2288-1484 (Online)

# 사업주의 산재보험제도 활용에 대한 인식 및 대응유형

정 재 훈\*·박 대 영\*\*·오 주 연\* \*인하대학교 경영학부·\*\*노무법인 서해

# A Study on the Employer's Perception and Corresponding Type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Jae-Hoon Jeong\* · Young-Dae Park\*\* · <u>Ju-Yeon Oh</u>\*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ha University

\*\*Certified Labor Consultant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mployer's perception and corresponding type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To analyze the employer's perception and corresponding type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interviews and survey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analysis of interview and survey results, we proposed policy alternatives to raise awarenes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and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Keyword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Employer's Perception

# 1. 서 론

산재보험은 피재근로자에 대해 무과실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보험료의 사업주 전액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주도의 재해보상을 하는 보험제도로서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국가보험이라는 특성 때문에 1964년부터 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오다가, 1995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보험업무와 그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및 근로자복지증진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근로복지공사를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하여 동 공단으로 하여금 이들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이로서 산재보험 고유의 업무 이외에 근로자복지를 위한 다양한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산재보험 제도는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변화, 산업 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 사회보험 운영구조의 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오면서도 산재보험 시행 초기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강제가 아닌 임의가입 대상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강제가입대상 업종과 사업장 규모를 확대하여 왔다. 그런 결과로 2010년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의 적용을받는 피보험근로자는 14,198,748명으로 취업자(23,506천명: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의 60.40%, 경제활동인구(24,334천명)의 58.34%, 총인구(48,747천명)의 29.12%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0). 이와 같이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Received January 8, 2013; Revision Received March 6, 2013; Accepted March 9, 2013.

<sup>\*</sup> 본 연구는 2012년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sup>†</sup> Corresponding Author: Ju-Yeon Oh,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ha University, M·P: 010-3052-5689, E-mail: drojy@inha.ac.k

산재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인프라 를 갖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책임의 분담 문제와 아울러 산재보험의 강제 적용 대상임에도 해당 사업장이 적용신고 및 보험료 납입을 외면하거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을 중심으로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으로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문건설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66.5%가 은폐되고 있다는 주장 (매일노동뉴스, 2011)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다면 산재보험이 가진 본래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 해서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산재처리 기피이유와 재해근로자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연 구는 필연적 과제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연하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연(강제)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민사합의를 선택하는 등의 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장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응유형을 분석하고,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산재보험 제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국내 산재보험제도의 이론적 접근

## 2.1 산재보험제도의 개요

산재보험은 1964년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도입되어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사회보험제도이다. 건강보험제도 (1977년), 국민연금제도(1988년)및 고용보험제도(1995년)는 산재보험제도와 많은 시차를 두고 도입되었다.

국내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에 대한 국가대위, 신속·공정한 재해보상,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촉진, 보험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재해예 방과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추진 등과 같이 근 로자의 권익을 목적으로 일부 전환되고 있는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데 있고, 나아가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 제도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재해예방 활동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재해예방 기능을 보험료 차등화에 의한 경제적 유인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유인책으로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실적이 40억원이상인 사업과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적용하여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을 보험료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예방요율제도(Schedule Rate System)를 도입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핵심영역은 요양·재활부문, 보험급여체계 부문, 보험관리·운영부문, 보험적용부문 등으로 기술될 수 있으며, 이외에 보험료 징수법에 근거한 재정·징수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 2.2 산업재해 발생 추이

2000년-2010년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산재 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수는 2000년 대비 46.9% 증 가하였고, 그와 함께 재해자수도 43.0% 증가함으로써 재해율은 감소하였으나, 재해 건수는 감소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2.1> 참조). 이는 정부의 노력에 도 산업재해가 기대만큼 감소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업종별로 볼 때,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는 건설 업의 경우에는 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전국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파악하여 업체별 환산재 해율을 산정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4개의 군(群)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즉, 각 군별로 환산재해율이 우수 한 상위 10%(269개 업체, 2009년도 기준)는 일체의 지 도 감독을 면제하고, 업체의 환산재해율이 평균환산재 해율 이하인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 점(최고 2점)의 혜택을 부여한다. 반면에 환산재해율이 불량한 하위 10%(100개 기업, 2009년도 기준)는 사업주 에게 경고 조치하고, 각종점검 시 우선 선정하여 점검 을 실시하게 하였으며, 평균환산재해율을 초과한 경우 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0점, 건설 산업기본법상 시공능력 평가 시 공사실적액 감액(최고 5%) 등 각종 불이익을 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 의 재해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을 기점으로 건 설업에서 재해자 수와 재해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 다(<Table 2.2> 참조).

ISSN: 1229-6783 (Print) ISSN: 2288-1484 (Online)

<table 2.1<="" th=""><th>&gt; Change</th><th>of Indus</th><th>strial Accident</th><th>īS</th></table>	> Change	of Indus	strial Accident	īS
---	----------	----------	-----------------	----

	2000	2002	2004	2006	2007	2008	2009	2010
근로자수	9,485,557	10,571,279	10,473,090	11,688,797	12,528,879	13,489,986	13,884,927	14,198,748
재해자수	68,976	81,911	88,874	89,910	90,147	95,806	97,821	98,645
재해건수	67,930	80,755	87,033	88,821	89,106	94,745	_	_
재해율	0.73	0.78	0.85	0.77	0.72	0.71	0.70	0.69
도수율	2.89	3.19	3.51	3.31	3.15	3.41	3.37	3.27
강도율	1.88	2.13	2.48	2.65	2.26	2.53	1.80	1.89

주 1) 도수율은 1,000,000 근로시간당 재해발생 건수임, 주 2) 강도율은 1,000 근로시간 당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임

자료: 고용노동부(2011, 2009) 및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Table 2.2> Change of Industrial Accidents in Construction Industry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건설업	23,071	19,232	16,248	18,300	19,385	20,835	20,998	22,504	22,782
재해자수	(14.1)	(A16.6)	(A15.5)	(12.6)	(5.9)	(7.5)	(0.8)	(7.2)	(1.2)
재해율	0.87	0.95	0.76	0.72	0.67	0.64	0.65	0.70	0.74
환산재해율	0.57	0.51	0.40	0.45	0.44	0.43	0.50	0.41	_

주: ( )는 전년비 증감률, 자료: 고용노동부(2012), 2012년판 고용노동백서

## 2.3 산업재해 관련 법상의 산재처리 유인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은 법제 6조1)에서 그 적용사업장의 범위를 정하고, 법 제37조 에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 병으로 구분하여 정하였으며, 제40조에서 산재로 처리 하여야 할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기간의 최소일수를 정하는 방법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업장 과 재해, 요양기간을 정하고 있다2). 이 기준에 따라 사 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 으려는 재해근로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 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산재법은 법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따라서 산재법에서는 당연히 산재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산재로 처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규정이나 조 치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오로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예정한 부당이득 징수3), 그에 따른 벌칙4)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의 조력의무(법 제116조), 산재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조사권한(법 제117 조) 등을 규정함으로서 일견 재해근로자들의 업무상재 해에 대한 산재처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사업주의 조력의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 고 있는 정도여서 산재법으로 업무상재해에 대한 산재 처리를 유인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 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 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 안법'이라 한다.)은 제10조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

<sup>1)</sup>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up>2)</sup>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기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sup>3)</sup>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sup>4)</sup> 법 제127조

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 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 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한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와 같은 사업주의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 위에 대해 산재은폐(최근에는 '사업주의 산재발생 보고 의무 위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로서 동법 제72조에 의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으로서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처리 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함으로써 입는 경영상의 부담(보험요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 상,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및 개선명령에 따른 경제 적 부담, 국가발주 공사참여 제한 등)을 이유로 사업주 의 산재처리 기피현상은 감독기관의 지속적인 계도와 신고센터, 신고기간 운영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2.4 산재보험제도 활용에 대한 선행 연구

김상호(2007)는 산재보험제도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검 토한 후 독일과 일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현 행 보험요율 산정방식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유인기능이 취약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업무상 질병 적용의 합리성이 결여되고, 일부 업종에서 대기업의 과다한 보험 급여 지출을 문제점으로 지적하 였다.

김상호(2010)는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을 적절히 평가하여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면 기여와 비용부담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경제적 유인책이 작동하게되어 사업주의 산재예방 활동 강화를 유인하며, 이를통해 산재 발생을 줄이고 재원조달에 참여하는 개별기업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 및 신설사업장에는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재예방 활동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이 재해자수와 재해율이 감소하지않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홍성호·최진우(2010)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도 동일한 원칙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으로 보상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나 일부 재해는 발생사실을 은폐하여 건설업체나 현장에서 직접 보상

하는 '공상처리'로 불리는 음성적인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며 건설업에서 공상처리가 활용되는 이유는 건설업체의 재해율이 나빠질 경우 공공공사에 입찰 시 PQ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아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내 건설 산업에 재해가미치는 영향과 환경을 조사하고, 발생된 재해의 처리방식에 대해 분석한 바, 이를 바탕으로 현장참여자에 대한 설문을 통해 재해의 영향과 인식, 처리 방식에 대한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 도출의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김상호(2011)는 산재보험제도는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변화,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 사회보험 운영구조의 변화 및 저 출산·고령사회의 도래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제도가 시대변화에부응하는 제도로 변화하여 바람직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현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보험료율 산정 과정에서의 취약한 예방기능, 장기재정 불안정 및 취약한 재활기능을 지적하고 사업주의 예방활동이 강화되도록 업종별 보험료율과 개별실적요율의 수지율 산정 방법을 변경하고, 장기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거 재해에 대한 보상 때문에발생하는 미 적립채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적립금 규모를 늘리고, 산재 발생 시 직장에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관심과 학문적 연구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연구는 해외 산재보험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실제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이에 대한 실무참여자들의 의견이 조사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체에서 산재보험제도의 인식및 대응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현장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RQ 1: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산재보험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 인식 수준은 어떠한가?

RQ 2: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업무 중 재해(사고 및 질병) 발생 시 대응 유형 및 그 원인은 무엇인가?

RQ 3: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산재보험제도의 활용에 대한 인식 정도와 산재보험이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RQ 4: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산재보험제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 3. 연구방법

## 3.1 인터뷰

인터뷰는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및 의존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산재보험제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선행조사로서 이 선행조 사결과를 토대로 설문내용을 구성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사업장 사업주 3명과 실무 담당자 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201년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업장 인터뷰인 경우 모두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루어졌고, 인터뷰 내용은 연구자들의 토론결과 만들어진 질문지(설문내용)를 토대로 하되 순서나질문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면접자가 응답자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면접자가 필요한 내용을 메모하여 추후 정리하였다.

## 3.2 설문조사

2011년 기준 수도권지역에 분포된 재해자는 45,229명 으로 전체 재해자 93,292명 중 총 48.5%를 차지하고 있 으며, 사업규모별 재해근로자 분포를 살펴보면, 2011년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재해자가 76,885명 으로 전체 재해자 93,292명 중 총 82.4%를 차지하고 있 다(한국산업안전공단, 각 년도).

이런 이유로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대응유형 분석을 위하여 산재사고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존에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중, 제조업, 50인 이하 사업장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무작위(random) 표본추출 방법을 적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사업장의 경우는 사전에 모니터링 한 총 300여개소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실무자를 상대로 직접 인터뷰 형식으로 설문에 대한 답을 듣고, 사업장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는 방식과 e-mail로 설문을 배포하고 작성된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나, 회수된 설문지는 170부에 그쳤다.

조사기간은 2012년 5월 29일부터 2012년 7월 13일까지(7주)이다.

연구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업무상 재해 관련, 산재보험관련 사항, 일반적사항으로 구분된다(<Table 3.1> 참조).

설문조사는 5점 척도, 예/아니요 선택문항으로 구성 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도구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ver. 17.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1> Items of Measurement

ISSN: 1229-6783 (Print)

ISSN: 2288-1484 (Online)

구분	세부항목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 필요성 및 유용성
인식 관련	
업무 중 재해	• 업무 중 재해(사고 및 질병) 경험 유무
경험과 대응 관련	• 업무 중 재해(사고 및 질병) 시 대응유형 및 원인 • 향후 재해(사고 및 질병) 발생 시 대응형 및 원인
산재보험제도 활용 중요사항인식	•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위한 중요사항
일반적 사항	• 사업장 지역, 사업종류, 정규직, 비정규직 종업원수, 사업계속기간

# 4. 연구결과

## 4.1 인터뷰결과

사업주에 대한 인터뷰는 설문지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조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2012년 5월에 있었던 인터뷰이다. 인터뷰에 응한 사업장 개요는 다음과 같다.

사업장 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개시일
(주)삼화〇〇〇	김ㅇㅇ	인천시	휴대폰부품제조	2003. 7.
		남동구 인천시		
동화○○(주)	김ㅇㅇ	선선적 서구	목제품제조	1948. 4.
(주)우양ㅇㅇㅇ	강00	경기도	대기오염방지시설	2001. 7.
(4)78000	7800	시흥시	네기오급형시시설	2001. 7.
		인천시	철강 또는	
(주)삼성〇〇	김ㅇㅇ	서구	비철금속주물제조	1982. 3.
		(1)	업	

인터뷰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초조사용 설문내용의 순서에 따라 인터뷰가 이루어졌고, 사전에 연구목적임 을 밝히고 사실그대로 진솔한 답변을 요청하여 이루어 졌다.

<Table 4.1> Employers' Interviews

#### <(주)삼화000>

사업장은 1977년에 최초로 설립되어 1993년에 현 인천광역 시 남동구 남동공단으로 이전하였고, 2003년에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장으로서 법인 전환 시에 산재보험에 새로이 가입한 사업장이다.

사업장은 프레스를 이용하여 자동차부품, 휴대폰 부품 등을 제조하는 프레스부품가공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0 여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휴대폰 내외장 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인터뷰에 응한 사업주는 1977년부터 사업을 행하여온 창업 자로서 회사와 직원에 대한 애정과 자존감이 높은 분이었 다

우선 산재보험에 대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문자, 첫 답변이 "지금과 같이 추가적 비용이 들어가는 제 도라면 필요하지 않다. 차라리 보험료를 인상하여서라도 사업주가 추가적 비용부담(민사보상, 비보험으로 처리되는 병원비 등)과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제도를 만들 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제도이다."라는 답변이었다. 반면 에 산재보험이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보험기능이 있 어 그 한도 내에서는 유용하다는 답변이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사례와 함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까지 경험하고 있었는데, 사업장의 산재보험 처리 기준은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고, 장해가 남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공상으로처리한다고 하였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공상으로처리한다고 하였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공상으로처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는 것 때문이고, 또 일단 산재로 병원에 입원하면 소위 브로커들이 접근하여 재해 근로자에게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사가 감당하기 힘든 요구를하는 경우가 많고, 산재사고율이 높아지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를 받게 되며, 사업주 표창이라든지 대출에 있어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절차나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기계조작 중 부주의하여 오른손 2, 3, 4, 5수지 절단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빨리 처리 되었고, 그 절차나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재해근로자의 현업 복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 대부분 장해가 남는 경우여서 본인들이 복귀하여 같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민사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드물게 원직복귀를 조건으로 민사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였다.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연간 8천만원선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바, 납부한 보험료를 다 찾아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불만이라고 하고, 무엇보다도 재해근로자의 본인과실의 경우 사업주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본인의 부주의로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게 보상에 있어패널티를 준다든지 하는 형태로 근로자 과실로 인한 재해를 따로 취급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산재보험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예방요율제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과 함께 산재보험료를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할 것이아니라 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에 직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종별로 보험요율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동화ㅇㅇ(주)>

사업장은 1948년에 설립한 지역 향토기업으로 상시근로자 330여명을 고용하여 MDF등 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인터뷰에는 사업장 인사담당팀장이 응하였다.

해당사업장은 연간 산재보험료로 4억4천여만원을 납부하며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인 경우 산재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 으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부상이 경미하여 장해가 남지 않 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록 경미하거나 장해가 남지 않는 재해이긴 하지만 이렇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째는 재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재해자나 회사 모두 굳이산재로 처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개별실적요율에 따른 보험료 인상우려, 셋째는 회사 단체 협약에 의해 산재처리의 경우 요양기간 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만 지급 받지만,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간에 대한 상여금이 지급되기 때문에근로자들이 공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긍정적 응답을 하였고, 실무자이지만 근무하면서 산 재보험에 대한 홍보물이나 광고, 교육 등을 받아본 적이 없고, 본인이 직무수행상 필요에 의해 공단 홈페이지와 법 령, 업무처리 과정을 통해 산재보험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산재보험제도에 대해서 산재보험 처리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며, 예방요율제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현 개별실적 요율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산재보험 요율 결정(사업의종류 결정)에 있어 실제 사업내용을 보기 보다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 등기부상의 사업내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었다.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입장이고, 이를 방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모두 산재처리 하여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 하므로, 근로자의 귀책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을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었다.

#### <(주)우양ㅇㅇㅇ>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대기오염방지시설 제조 및 설치 업체로서 상시근로자수는 24명이며, 연간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는 약 1천 2백만원 정도이고, 2001년 법인 전환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된 사업장이다.

인터뷰에 응한 사업주는 창업주로서 창업 시부터 법인으로 전환한 지금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본인이 원 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분이 었다.

우선 산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급적이면 산 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산재보험이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따라서 필요성에 대해 서 공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유용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사업을 하면서 산재보험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실무자들이 보고하거나 실무자에게 물어서 알고 있으며, 산재보험 보다는 산업안전 보건법상 사업장에서할 수 있는 것은 다했음에도 사고가 있으면 그와 연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점검과 처벌, 개선명령 등으로 고용노

oi.org/10.12812/ksms.2013.15.1.87 ISSN: 2288-1484 (Online)

동부가 사업장을 괴롭힌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선 산업안전 보건법상 점검과 처벌에 대해서 불만이 크기 때문이고, 이 점에 대해서 법체계에 대해 설명하자 회사의 안전장치 미 비나 안전교육 등의 미비로 인한 사고가 아닌, 정말 사고 가 일어나지 않을 상황에서 직원들의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두 번째로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 하였지 만, 실제 어느 정도나 부담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막연히 사고가 많으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 산재처리를 하거나 공상으로 처리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고 나면 보상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있다면서 병원에 브로커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재보험제도에 대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과실이 아닌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 보건법이든 산재보험법이든 어떤 불이익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예방요율제와 개별실적 요율제 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산재보험료가 부담되는 것은 아니라 는 입장이어서 다른 처벌이나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보험료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 <(주)삼성 0 0>

이 사업장은 인천 서구 경서동에 주물단지가 들어서면서 입주한 철강 또는 비칠금속주물제조업체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사업주는 산재보험 보다는 원청 업체들이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서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다.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주로 동종업종의 사업주와의 교류 또는 산재 담당직원을 통해서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산재보험에 대한 홍보물이나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산재보험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업주는 물론이고 직원들에게도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직원들이 산 재처리를 남용하는 문제(부상성 재해가 아닌 요통 등 질병 성 재해에 대해 자신의 입장에서는 발병 경위가 불분명하 고 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까지도 산재 처리를 하고 장기간 요양하는 것)에 대해 산재보험제도의 부작용이라는 입장이었다.

산재보험제도에 대해서는 개별실적요율제에 대해서 실제로당해 사업장이(사업의 종류 : 22006, 산재보험일반요율 : 37/1,000) 2010년도에는 개별실적요율(27.93/1,000)을 적용받아 확정보험료 약 3,0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2011년도에 개별실적요율(33.11/1,000)과 임금총액 변동으로 약 3,7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바, 사업주는 사양산업의 어려운경제적 여건에 700만원이나 보험료를 추가부담 하였고, 무엇보다도 회사는 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사실적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재해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처리하였다면 납부한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부담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하자 그에 대해서 납득은 하지만 여전히 회사의 잘못이아니었다는 이유로 불만스러워 하였다.

ISSN: 1229-6783 (Print)

산재보험 요율에 대해 예방요율제도 등 다른 요율제도에 대해 설명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보험료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사업주의 과실이 아닌 재해에 대한 책임문제에 더 관심을 보였으며, 오히려 치료가 끝난이후에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험료를 더 걷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모두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업종의 특성상환경에 대한 규제와 함께 산재처리를 함으로써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시설개선 명령에 대해서 부담을 크게가지고 있었다.

사업주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주들 역 시 산재보험에 대해서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무담당자 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사항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었 고, 사업주는 물론이고 실무자까지도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홍보물을 접하거나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산재보험 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 에 대해서 매우 높게 인정하고 있었지만, 재해보상에 있어 산재보험으로 완결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근 로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 사업주의 과실이 아닌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또 산제보험 제도를 이 용하지 않는 기준이 장해가 남는 재해인지 여부에 따 른다는 것과 산재보험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보험요율 인상 우려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 에 대한 부담, 재해근로자들의 과도한 민사보상 요구에 대한 우려에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인터뷰 결과가 전체사업장의 일반적인 인식 태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해율이 높은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 4.2 설문조사 결과

응답 사업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경기가 64.1%(109명)로 가장 많았고, 인천 25.9%(44명), 서울 9.4%(16명), 강원 0.6%(1명)순이었으며 수도권의 비율이 99.4%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1.2%(104명)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건물관리,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11.2%(19명), 판매서비스업 6.5%(11명), 운수업 5.9%(10명), 건설업 4.7%(8명)순으

로 나타났다. 기타 10.6%(18명)이 있으며 기타 항목으로는 공공기관, 컨설팅, 부동산 서비스, IT업체 등이 있었다.

사업장의 정규직 종업원 수로는 30명 미만이 52.9%(90명)로 가장 많았으며, 100명 이상~300명 미만 17.1%(29명), 30명 이상~50명 미만 13.5%(23명), 50명 이상~100명 미만 8.2%(14명), 300명 이상 8.2%(14명) 순이었다.

사업장의 비정규직 종업원 수로는 30명 미만이 84.7%(144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명 이상~50명 미만 5.3%(9명), 50명 이상~100명 미만 4.1%(7명), 100명 이상~300명 미만 4.1%(7명), 300명 이상 17.6%(45명) 순이었다.

기업의 연령별로는 10년 이상 56.5%(96명)로 가장 많았고, 7년 이상~10년 미만 13.5%(23명), 3년 미만 11.2%(19명), 5년 이상~7년 미만 11.2%(19명), 3년 이상~5년 미만 7.6%(13명) 순이었다(<Table 4.2> 참조).

< Table 4.2> Demographic Information

	구 분	빈도(명)	비율(%)
	서울	16	9.4
지역	인천	109	64.1
71 7	경기	44	25.9
	강원	1	0.6
	제조업	104	61.1
	건설업	8	4.7
업종	운수업	10	5.9
HO	판매서비스업	11	6.5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19	11.2
	기타	18	10.6
	30명미만	90	53.0
정규직	30-50	23	13.5
종업원	50-100	14	8.2
수	100-300	29	17.1
	300명 이상	14	8.2
비정규	30명미만	144	84.7
직	30-50	9	5.3
	50-100	7	4.1
종업원	100-300	7	4.1
<u>수</u>	300명 이상	3	1.8
	3년 미만	19	11.2
사업	3~5년	13	7.6
계속	5~7년	19	11.2
기간	7~10년	23	13.5
	10년 이상	96	56.5
	합계	170	100.
	됩세	170	0

산재보험의 필요도에 있어 전체 응답자(170명) 중 반드시 필요하다가 66.5%(113명)로 가장 많았으며, 어느정도 필요하다 20.0%(34명), 보통이다 8.2%(14명), 별로

필요하지 않다 3.5%(6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 1.8%(3명)로 나타나, 산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94.7%(161명)가 산재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2>참조).

산재보험제도의 기업경영상의 유용성에 대해 설문한결과 매우 유용하다가 37.6%(64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유용하다 32.9%(56명), 보통이다 21.2%(36명), 별로 유용하지 않다 6.5%(11명), 전혀 유용하지 않다 1.8%(3명) 순으로 나타나, 산재보험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91.7%(156명)가 산재보험제도가 기업경영에 있어 유용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3> 참조).

<Table 4.3> The Need and Usefulness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전혀	별로		어느	반드	
			필요	필요	보통	정도	시	합계
			하지	하지	이다	필요	필요	[ 업계
			않다	않다		하다	하다	
	필 요	빈도	3	6	14	34	113	170
	성	비율	1.8	3.5	8.2	20.0	66.5	100.0
	유 용	빈도	3	11	36	56	64	170
_	ㅎ 성	비율	1.8	6.5	21.2	32.9	37.6	100.0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사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처리한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5.9%(95명), 처리한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1%(75명)로 처리한적 없는 사업장이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4> 참조).

<Table 4.4> The Experience Handing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구 분	빈도(명)	비율(%)
처리한 적 있다	75	44.1
처리한 적 없다	95	55.9
합계	170	100.0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사유를 설문한 결과, 회사방침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어서 48.4%(44명)로 가장 많았고, 재해근로자가 요구하여서 24.2%(22명), 재해근로자와 합의하여서 22.0%(20명), 감독기관에서 명령(요청)이 있어서 3.3%(3명), 원청 또는 하청업체에서 요구하여서 1.1%(1명), 기타 1.1%(1명)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5> 참조).

<Table 4.5> The Reason of the Experience Handing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구 분	빈도(명)	비율(%)
재해근로자가 요구하여서	22	24.2
회사 방침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어서	44	48.4
감독기관에서 명령(요청)이 있어서	3	3.3
원청 또는 하청업체에서 요구하여서	1	1.1
재해근로자와 합의하여서	20	21.9
기타	1	1.1
합계	91	100.0

### 주)복수응답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 시 처리방법을 보면 산재 보험처리가 57.4%(66명)로 가장 많았으며, 공상처리가 20.9%(24명), 건강보험처리가 7.8%(9명), 현금처리가 6.1%(7명), 가입된 민간 상해보험 처리가 5.2%(6명), 자 동차보험처리가 1.7%(2명), 기타가 0.9%(1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으로는 해운조합 선원공제 보험처 리의 응답이 나왔다(<Table 4.6> 참조).

< Table 4.6 > Processing Methods

구 분	빈도(명)	비율(%)
산재보험처리	66	57.4
공상처리	24	20.9
건강보험처리	9	7.8
가입된 민간 상해보험 처리	6	5.2
자동차보험처리	2	1.7
현금처리	7	6.1
기타	1	0.9
합계	115	100.0

#### 주) 복수응답

재해 및 질병 치료 시 처리 방법에서 응답자들의 답변과 같이 처리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보험요율 인상우려가 49.0%(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편한 청구절차 및 심사 방식이 23.5%(12명), PQ 가점취득이5.9%(3명), 회사 내부 인사 상 불이익 우려가 3.9%(2명), 원청업체의 요구가 2.0%(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기타로는 15.7%(8명)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대상 직원의 요구, 장기요양 예상, 회사시설개선 압박 등이 있었다(<Table 4.7> 참조).

< Table 4.7> The Reason of Processing Methods

구 분	빈도(명)	비율(%)
보험요율 인상 우려	25	49.0
PQ(Pre-Qualification: 사전심사) 가점 취득	3	5.9
불편한 청구 절차 및 심사 방식	12	23.5
회사 내부 인사 상 불이익 우려	2	3.9
원청 업체의 요구	1	2.0
기타	8	15.7
합계	51	100.0

주) 복수응답

향후 재해(사고 및 질병)를 가정하여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170명)에게 복수응답으로 설문한 결과 산재보험처리가 45.8%(138명)로가장 많았으며, 건강보험처리 16.3%(49명), 공상처리15.6%(47명), 가입된 민간 상해보험 처리 12.6%(38명), 자동차보험처리 6.0%(18명), 현금처리 2.7%(8명), 기타1.0%(3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직장상해복지보험 등으로 나타났다(<Table 4.8> 참조). 결론적으로 재해 및 질병 처리 방법에 대한 응답결과 산재보험처리 방식이 45.8%(138명)로 산재보험처리가 아닌다른 처리 방법을 더 많이 활용 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ISSN: 1229-6783 (Print)

ISSN: 2288-1484 (Online)

< Table 4.8> Processing Methods in the Future

구 분	빈도(명)	비율(%)
산재보험처리	138	45.8
공상처리	47	15.6
건강보험처리	49	16.3
가입된 민간 상해보험 처리	38	12.6
자동차보험처리	18	6.0
현금처리	8	2.7
기타	3	1.0
합계	301	100.0

#### 주) 복수응답

향후 재해 및 질병 발생 시 특정한 처리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산재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가 50.2%(111명)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요율 인상 우려 20.4%(45명), 불편한 청구 절차 및심사방식 14.9%(33명), 회사 내부 인사 상 불이익 우려 3.6%(8명), PQ 가점 취득 2.7%(6명), 원청 업체의 요구 1.8%(4명) 순이었으며, 기타 6.3%(14명)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규정 준수, 보상 금액의 과다, 재해당사자의 입장 고려, 회사시설개선 압박, 산업안전조사, 대외적 제재 우려 등의 대답이었다(<Table 4.9> 참조).

<Table 4.9> The Reason of Processing Methods in the Future

구 분	빈도(명)	비율(%)
산재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111	50.2
보험요율 인상 우려	45	20.4
PQ(Pre-Qualification: 사전심사) 가점 취득	6	2.7
불편한 청구 절차 및 심사 방식	33	14.9
회사 내부 인사 상 불이익 우려	8	3.6
원청 업체의 요구	4	1.8
기타	14	6.3
합계	221	100.0

산재보험제도 적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 현행 보험요율(매뉴얼요율제도)체계개선이 29.4%(50명)로 가장 많았고,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21.2%(36명), 예방요율제도 도입11.8%(20명), 재해율 산정에 업무상 근로자과실로 인한 재해반영(단, PQ항목에 제외) 10.6%(18명), PQ항목 및 가점 방식의 조정 9.4%(16명), 개별실적요율제도 대상의 확대 8.8%(15명), 체계적 재활시스템 구축 2.9%(5명), 기타 3.5%(6명), 무응답 2.4%(4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질병판정 위원회 폐지, 해당직원의 안전보장, 사업장 규모나 의지에 따른 자유가입 등이 있었다(<Table 4.10> 참조).

<a href="<"><Table 4.10></a> The Important Items for Applying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구 분	빈도(명)	비율(%)
현행보험요율(메뉴얼요율제도) 체계 개선	50	29.4
예방요율제도 도입	20	11.8
개별실적요율제도 대상의 확대	15	8.8
PQ항목 및 가점 방식의 조정	16	9.4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36	21.2
체계적 재활시스템 구축	5	2.9
재해율 산정에 근로자과실로 인한 재해 반영	18	10.6
기타	6	3.5
무응답	4	2.4
합계	170	100.0

# 4.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사업체 조사결과 산재보험의 필요도에 있어 전체 응답자 중, 94.7%가 산재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Table 4.3> 참조), 산재보험제도의 기업경영상의 유용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91.7%가 '유용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3> 참조). 반면에 인터뷰 결과에서는 산재보험제도의 보완이 없이는 그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점과, 설문조사 결과 여전히 10% 내외의 사업체가 산재보험의 필요성과 유용성에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은 산재보험이 갖는 사업장 위험부담경감기능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해 산재보 험으로 처리한 사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처리한 적 있 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4.1%이고, 그 이유로서 회사방 침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어서가 48.4%로 가장 많았고, 재해근로자가 요구하여서 24.2%, 재해근로자와 합의하여서 22.0% 등으로 나타나, 재해근로자와의 합의 역시 재해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것임을 생각한다면, 재 해근로자의 산재처리 요구가 사업주로 하여금 산재보 험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산재보험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는 근 로자들의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 스스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 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응답자에 대해 업무와 관련한 재해(사고 및 질병)가 발생한 경험에 대해 설문한 결과 경험이 있다가 47.1%로 응답하였고, 응답자 중, 재해 및 질병에 대한처리방법을 해운조합 선원공제 보험 처리한 기타응답을 제외한 41.7%가 산재처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 보험요율인상우려가 49.0%로 가장 많았으며, 불편한 청구 절차및 심사 방식이 23.5%, PQ 가점취득이 5.9%, 회사 내부 인사 상 불이익 우려가 3.9%, 원청업체의 요구가 2.0%, 기타 응답으로는 대상 직원의 요구, 장기요양 예상, 회사 시설확충 압박 등이 15.7%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업무상 재해 발생경험이 있는 사업장의 40%이 상이 산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업무상 재해 또는 질 병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근로자들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더욱 큰 문제는. 그 이유가 모두 사업의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산재보험제도의 활 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역할이 중요한 것임 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산 재보험의 활용성을 높이도록 하는 촉진책으로는 산재 처리로서 부담하게 되는 산재보험요율인상, 산업안전보 건법상의 조치 등을 완화시키는 정책으로 경영상의 부 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산재처리기피 근절책으로는 고의적 산재은폐의 경우 현행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정하고 있는 처벌 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교육과 연계 하여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산재지 정병원에서 업무상재해에 대해 재해근로자 및 사업주 에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근 로복지공단에의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재해(사고 및 질병)를 가정하여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응 답이 45.8%로 산재보험처리가 아닌 다른 처리 방법을 더 많이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경미한 재해 또는 장해가 남지 않는 재해까지 산재보 험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요율 인상을 우려(20.4%)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주들이 구체적으로 현행법의 보험요 율제도에 대해 알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보이고,

ISSN: 1229-6783 (Print) ISSN: 2288-1484 (Online)

그 밖의 사유 역시 모두 산재보험으로 처리함으로써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적,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사업주의 산재보험 활용도를 높이는 두 가지 축은 하나는 근로자의 산재보험 인식정도를 높여 자신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하는 것과 함께 나머지 하나는 사업주의 귀책이 아닌 재해에 대해서는 개별실적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치에 있어서도 사업주의 면책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산재보험 청구절차 등에서 병원과 공단에서 불필요한 자료제출요구의 감축이나 처리시간의 단축 등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 합리화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 엇인지에 대한 설문에서 현행 보험요율(매뉴얼요율제 도)체계개선이 29.4%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에서도 확 인되고 있으며, 현재 근무 사업장의 산재보험이 별로 또는 전혀 활용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현재 사업장의 산재보험 활용도에 있어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문한 결과 보험요율 인상우려 52.5%와 불편 한 청구절차 및 심사방식 12.5%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 5. 정책적 제언

이상의 인터뷰와 설문조사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산 재보험제도의 인식도 제고와 산재보험 활용도를 높이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5.1 교육 및 홍보 확대 방안

첫째, 사업주와의 인터뷰 내용(동화○○(주), ㈜우양 ○○○, ㈜삼성○○)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듯이 산재보험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홍보물이나 교육을 받 은바 없다고 하고 있다는 점과,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인 보험요율인상우려에도 실제보다 과장 된 불이익을 느끼고 있다는 점(㈜삼성○○), 설문조사 결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데 근로자의 요구가 중요 하다는 점, 산재보험 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10% 내외의 사업장이 있 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근로 관계 당사자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홍보 방안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남녀고 용평등법 시행일(1988.4.1)을 기념하여 매년 4월 첫째 주를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으로 설정하여 각종 세미나와 홍보를 하고 있는 예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일(1963. 11. 5.) 또는 시행일(1964. 1. 1.)을 기점으로 "산재보험홍보주간"을 정하여 전 국민을 상대로 한대대적인 TV광고와 근로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전 국민을 상대로 산재보험의 유용성에 대한 언론홍보와 함께, 학계전문가들과 현장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세미나, 학술대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재활우수사례발표, 우수사례에 대한 드라마 제작 등의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또한 산재보험 업무를 맡은 근로복지공단은 정기적인 TV광고 및 인터넷 홍보와 함께, 재해근로자에 대한 SNS서비스를 통한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산재보험제도의 회사 경영에 있어서의 유용성, 산재보험 제도 중에서도 산재보험 처리절차와 재해 미 보고를 밝혀내는 과정, 사업주의 재해발생 보고의무 미 이행시 법적책임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사업주의 산재보험 처리기피 현상을 줄여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업주 교육은 고용노동부 각 지청이 산재 취약사업장 에 대한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산재보험 처리절 차와 재해 미 보고를 밝혀내는 과정, 사업주의 재해발 생 보고의무 미 이행시 법적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포 함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 5.2 산재보험의 활용성 제고 방안

첫째, 우선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도 를 높여 스스로 권리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는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이유 중 '재해근로자가 요구하여서'(24.2%)와 "재해근로 자와 합의하여서"(22.0%, <Table 4.5> 참조)라고 응답 한 비율이 사업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답 변 다음으로 많다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 자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 근로자가 재해 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 로 생각된다. 이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 동조합을 통한 교육과 홍보를,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 교육시간을 할용 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구체적 홍보 방안은 앞에서 살펴본 인식도 제고 방안을 참고하여 시행하되, 이 경우 산재신청을 기피하는 사용자의 산재 신청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은 명백히 부당한 인사 조치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주의 원천적인 산재보험 처리기피 뿐만 아 니라, 사업주의 산재보험에 대한 조사지연, 자료제출거 부, 날인거부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 날인제도에 대해서 그 개선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07년과 2012년에 국가 권익위원회는 사업주 날 인제도가 법령상 규정된 강제사항이 아닌 단순한 사업 주의 확인사항임에도 재해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의 날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산재치료의 접근 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사업주 측에서 1차적 으로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하여 사전에 산재보험급 여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산재요 양신청 시 사업주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 것은 산재승 인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산재경위, 근무상황 등의 사실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등의 폐단을 이 유로 그 폐지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가인권위원 회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미 사업주 날인 없이 근로복 지공단이 조사를 통하여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사업주 날인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들의 인식이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제도 악용과 그 도 덕적 해이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아울러 대부 분의 사업주가 날인제도를 악용하지 않고 있어 앞에서 살펴본 순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주 날인제도는 존치시키되, 사업주의 특별한 이유 없는 날인거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보험수지율 산정 에 있어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지도점검 사업장 선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등으로 사업주의 사업주날인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만드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겠다.

셋째, 설문조사 결과 사업주가 산재보험 처리를 기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험료 부담 증가라고 응답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개별실적요율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재해의 경우 수지율 산정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인상률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 요하다. 실제 인터뷰에 응답한 중소사업장((주)삼성○ ○)의 경우 산재보험 개별실적 요율에 따라 증가되는 보험료가 재해발생에 따른 보상금액에 비하면 적은 금 액이지만, 사업장에서 느끼는 비용부담 압박은 재해보 상을 맡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제3자가 느끼는 부담 정 도를 뛰어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한 다면 실제로 수지율 산정에 있어 산재보험의 특성상 과실여부를 개입시키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 미 이행으로 인 한 재해의 경우에는 수지율 산정에 가중치를 높여주고 (예를 들어 산정된 증감율에 일정 가중치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중과실 또는 사업주의 책임 없는 재해(사업장 밖에서의 교통사고 등)로 인한 경우에는 수지율 산정에 가중치를 낮추어 주는(산정된 증감율에 사업주의 산업 안전보건법상의 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재해에 부과한 가중치만큼 낮추어 부과)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업주의 산재보험 처리 기피이유 중 하나가 재해발생으로 부담하게 되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 건법상의 조치가 경영상 부담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주의 산재보험 처리 기피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사업 장 점검 또는 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 시 사업주의 책 임 없는 교통사고는 재해 건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재해 등 에 대해서도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이나 조치대상 재해에서 제외시키는 등으로 산재예방지도 제도를 개선할 필요 가 있다. 다만 사업주의 고의적인 산재처리 기피(사업 주의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정하고 있는 처벌과 아울러 허 위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와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공표대상에 포함시키 고, 사업주 교육과 연계하여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한 교 육을 강화 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앞에서 살펴본 개별 실적요율 수지율 산정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반영하여 산재보험 요율을 인상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사업주 인터뷰 내용 중 산재처리 기피원인 중 하나가 근로자들의 추가적인 민사보상 요구에 대한 우려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산재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모든 보 상과 민사배상 책임까지 완결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 다.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사용자책임배상보험과 근재보험이라는 별도의 사보험 을 추가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함으로써 모든 민·형사상의 배상책임 을 면할 수 있도록, 현재 실효성 없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산재보험의 특별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장해특별급여), 제79조(유족특별급여)) 운용방식을 사 업주의 100% 과실인 경우로 한정하기보다, 근로복지공 단에서 독립한 '산재보험(민사)조정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가 특별급여를 담당하도록 하여, 동 기구가 특별급 여와 함께, 사업주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별도 보험료 (시중의 근재보험 보험료기준을 고려하여)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현재 사업주들이 가입하고 있는 근재보험 또 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겠다.

# 5.3 연구의 기여와 한계

본 연구의 기여와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 주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재보험 가 입자인 사업주의 국내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및 산 재사고 발생 시 대응유형을 파악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산업현장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산재보험제도의 인식도 제고와 산재보험 활용도를 높이기위한 국가의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 수집상의 한계점이다. 본 연구의 표본은 수도권 지역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를 위주로 한 것이므로, 기업의 규모와 지역적인 한계 점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기업 규모와 지 역별 구성비를 고려한 연구를 통해 일반화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인식과 대응유형에 관한 연구로서 근로자들의 인식정도 등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과제로서 산재보험 수혜자인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유형을 파악하여 본연구와 접목함으로서 의미 있는 정책대안이 도출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무과실 책임주의에 근간을 둔 산재보험 제도로 사업주의 관리상의 과실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민사배상 책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업무상의 과실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까지를 완결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법리적인 문제와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 6. 참 고 문 헌

- [1]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2), \(^{\text{Wihte}}\)
  Paper for Employment and Labor Published in \(^{2012}\_{\text{}}\)
- [2]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2011), <sup>7</sup>The Annal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 2011
- [3]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2009),

   Analysis of an industrial accident in 2009\_
- [4] Sang-ho Kim(2007), "A Study on the System of Individual Risk Rating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23(1): 113–131.

[5] Sang-ho Kim(2010),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chedule Rating System i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26(2): 123–143.

ISSN: 1229-6783 (Print)

- [6] Sang-ho Kim(2011), "Major Problems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n Korea and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27(4): 225–246.
- [7] LaborNewsToday (2011. 4. 13), "Concealment of 66.5% of an Industrial Accident in Construction Industry." from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72
- [8] Korea Labor Institute(2010), KLI labor Statistics, 15–16.
- [9]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2000–2010), Analysis of an industrial accident.
- [10] Sung-Ho Hong Jin-Woo Choi (2010), "A Study about Circumstances and Perception of Construction Accident Compensatio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10(5): 69-74.

# 저 자 소 개

## 정 재 훈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 직 중, 영남대학교 경영학 과 졸 업, 서울대 대학원에서 인사관리 를 전공하여 석사를 취득, 동 대 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 캐나다 SFU 교환교수 등 <관심분야> 인사조직, 노사관계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인하대학교 6-507

## 박 대 영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현재는 노무법인 서해 대표공인 노무사로 재직 중 <관심분야> 노사관계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57 노무법인서해

# 오 주 연



인하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 현재는 인하대학교 경영학 부 강의교수로 재직. <관심분야> 인사조직, 노사관계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인하대학교 9-210